

농어업회의소법안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기초농어업회의소는 특별자치시, 시, 행정시, 군 및 지방자치단체
인 구를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립하도록 하고, 기초농어업회의소
대의원의 정원은 100인 이내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며,
단체대의원의 정원은 전체 대의원 정원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
하도록 함(안 제9조 및 제26조)
- 광역농어업회의소는 특별시, 통합특별시, 광역시, 도, 특별자치도를
관할구역으로 하여 설립하도록 하고, 광역농어업회의소의 일반
대의원은 관할구역 내의 기초농어업회의소의 회장, 부회장 및 청년
또는 여성대의원으로 하며, 단체대의원은 단체회원 중에서 선출
하고, 전체 대의원 정원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함(안 제3
8조 및 제45조)

II. 검토의견

1. 기초어업회의소가 별도로 설립된 경우의 규정 정비

- 안 제6조제1항은 농어업회의소를 ‘기초농어업회의소’와 ‘광역농어업회의소’로 구분하고, 안 제9조는 기초농어업회의소의 관할구역을 특별자치시, 시, 행정시, 군, 자치구로 규정하고 있음.

다만, 안 제6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는 기초농어업회의소와 별도로 안 제11조에 따라 같은 관할구역 내에 ‘기초어업회의소’가 설립되는 경우에는 ‘기초농어업회의소’와 ‘기초어업회의소’로 구분하여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- 그런데, 안 제16조, 제39조, 제40조 및 제45조는 기초어업회의소가 별도로 설립되어 하나의 관할구역 내에 복수의 기초농어업회의소가 존재할 경우의 적용규정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,

법적 명확성을 제고시키는 차원에서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.

구체적으로, 안 제16조제3항은 복수로 기초농어업회의소에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규정인데, 기초어업회의소의 회원으로 가입한 자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,

안 제39조제1항은 광역농어업회의소의 설립인가 요건으로 관할대상구역 수의 1/5 이상 지역의 기초농어업회의소가 발기하고, 발기인을 포함한 전체 관할대상구역 수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

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, 기초어업회의소가 개별 설립된 경우
광역농어업회의소 설립인가의 정수(定數) 요건이 불명확한 측면이
있으며,

안 제40조에서는 광역농어업회의소의 해산과 관련하여 안 제14
조의 기초농어업회의소의 해산 규정을 준용하도록만 규정하고
있어, 기초어업회의소를 포함한 기초농어업회의소가 해산됨에 따라
상기한 설립인가 정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의 해산 규정이
마련되어 있지 않고,

안 제45조제1항은 기초어업회의소가 개별설립된 경우의 일반
대의원 정수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.

- 위 사항에 대해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아래와
같이 수정의견을 마련함.

제 정 안	수 정 의 견
제16조(회원의 가입) ① · ② (생 략) ③ <u>기초농어업회의소의</u> 회원 으로 가입한 자는 다른 기초 농어업회의소의 회원이 될 수 없다.	제16조(회원의 가입) ① · ② (제정안과 같음) ③ <u>기초농어업회의소(제11조 제1항에 따라 개별설립된 기 초어업회의소를 포함한다. 이 하 이 항에서 같다)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
제정안	수정의견
제40조(준용규정) ① 광역농어업회의소의 설립등기, 정관 및 해산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기초농어업회의소”는 “광역농어업회의소”로, “시·도지사”는 “농림축산식품부장관”으로, “총회”는 “대의원총회”로 보고, 제13조제1항제8호 중 “총회, 대의원총회”는 “대의원총회”로 본다. 제45조(일반대의원 및 단체대의원) ① 일반대의원은 관할구역 내의 기초농어업회의소별로 총 3인(회장, 부회장, 청년 또는 여성대의원)으로 한다.	다)의 해산으로 인해 제39조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해산한다. ② 제1항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광역농어업회의소의 해산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. 제41조(준용규정) 광역농어업회의소의 설립등기 등, 정관에-----제12조 및 제13조를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제46조(일반대의원 및 단체대의원) ① -----관할구역 내의 기초농어업회의소(제11조제1항에 따라 개별설립된 기초어업회의소를 포함한다) -----

제 정 안	수 정 의 건
② ~ ⑥ (생 략)	-----. ② ~ ⑥ (제정안과 같음)

2. 기초농어업회의소 회장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의 규정 마련

- 안 제22조는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총회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, 안 제25조는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 총회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음.

특히 안 제25조제6항은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

- 그런데,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관한 내용이 안 제25조제5항의 대의원총회 조문에만 규정되어 있고 안 제22조의 총회 조문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,

기초농어업회의소 총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.

따라서, 안 제25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안 제22조로 이동하여 규정하고, 안 제25조제6항에 따라 대의원총회의 경우 안 제22조의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비함으로써 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.

- 위 사항에 대해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의견을 마련함.

제 정 안	수 정 의 견
제22조(총회) ① . ② (생략) ③ 회장은 총회를 소집하며, 총회의 의장이 된다. <단서 신설>	제22조(총회) ① . ② (제정안과 같음) ③ ----- ----- . <u>다만,</u> <u>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1명이 정관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의장이 되며, 회장 및 부회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 회원의 호선(互選)으로 선출된 사람이 의장이 된다.</u>
제25조(대의원총회) ① 기초농어업회의소에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를 둔다. ② 대의원총회는 일반대의원과 단체대의원으로 구성한다. ③ 정기 대의원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, 임시 대의원총회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	제25조(대의원총회) ① ~ ④ (제정안과 같음)

제 정 안	수 정 의 건
장이 수시로 소집한다. ④ 임시 대의원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. 1.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. 일반대의원 및 단체대의원이 대의원 재적정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⑤ <u>회장은 대의원총회의 의장이 된다. 다만,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1명이 정관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의장이 되며, 회장 및 부회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 대의원의 호선(互選)으로 선출된 자가 의장이 된다.</u> ⑥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, 이 경우 “회원”은 “대의원”으로 본다. 다만, 대의원총회는 기초농어업회의소의	<삭 제> ⑤ (제정안 제6항과 같음)

제 정 안	수 정 의 견
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.	

3. 벌칙 규정 정비

- 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은 농어업회의소의 정치적 중립 및 공직 선거에서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고, 같은 조 제3항은 누구든지 농어업회의소를 이용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

안 제56조제1항은 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- 그런데, 안 제56조제1항 각 호의 형벌 구성요건을 살펴보면 법인이 아닌 자연인을 대상으로 형벌을 부과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됨.

그러나 농어업회의소는 안 제5조제1항에 따른 법인으로서, 정치적 중립 등을 위반한 자연인을 대상으로 형벌을 부과하고자 하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안 제56조제1항에서 ‘제8조제1항 및 제2항’이 아닌 ‘제8조제3항’을 인용하여 형벌의 구성요건을 규율하는 것이 법 체계에 부합할 것으로 보임.

- 위 사항에 대해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의견을 마련함.

제 정 안	수 정 의 견
제8조(정치적 중립) ① 농어업 회의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,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. ② 농어업회의소는 공직 선거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1.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2.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3. 그 밖에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행위 ③ 누구든지 농어업회의소를 이용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	제8조(정치적 중립) ① ~ ③ (제정안과 같음)
<u>제56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</u> <u>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</u>	<u>제57조(벌칙) ① 제8조제3항을</u> <u>-----사람은-----</u>

제 정 안	수 정 의 견
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	----- -----.
1.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 어업회의소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이 되도록 한 자	<삭 제>
2.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농 어업회의소가 공직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	<삭 제>
② 제48조를 위반하여 선거 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	② 제49조를----- -----사람은----- ----- -----.

○ 그 밖에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,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전문위원 최 기 도)